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4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민형배 · 주철현 · 이성윤

정준호 · 양부남 · 박균택

이개호 · 안도결 · 조인철

김우영 · 문정복 · 전진숙

최혁진 · 정진욱 · 조계원

박지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
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
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
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

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9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31년”을 “203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9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31년 12월 31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p>	<p>법률 제799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96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 한다)</p> <p>제2조(유효기간) -----<u>2036년</u> -----</p> <p>--.</p>